

한두환 수의사 변호사의 법률칼럼 - 수의사의 생활법률 (13)

동물병원 인수 후의 채권 · 채무 관계



한 두 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today-we@hanmail.net

김명의 수의사는 이양도 수의사로부터 ‘양도 동물병원’을 인수하였다. 영업양도 계약에는 김명의 수의사가 ‘양도 동물병원’의 기존 직원들과 물품 및 의료기록들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김명의 수의사는 병원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양도 동물병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 ‘양도 동물병원’에 꽤 많은 외상 진료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 좋기로 유명했던 이양도 수의사가 사정이 어려운 보호자들에게는 나중에 진료비를 받기로 하고 치료를 해주곤 하였던 것이다.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에게 ‘양도 동물병원’에 진 외상 진료비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나주인씨는 이양도 수의사에게는 지급하겠지만 김명의 수의사에게는 진료비를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에게 외상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게 김명의 수의사가 ‘양도 동물병원’을 운영하여 오던 어느 날, 박고용씨가 찾아 왔다. 박고용씨는 예전에 ‘양도 동물병원’에서 일하면서 받지 못했던 월급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양도 수의사가 병원 사정이 어려워 박고용씨에게 월급을 밀렸던 것이다. 김명의 수의사는 밀린 월급은 이양도 수의사가 지급해야 하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거절하였다. 김명의 수의사는 박고용씨에게 밀린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나주인씨와의 문제에서, 나주인씨가 진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 자체는 명백하지만, 그 상대가 이양도 수의사인지 김명의 수의사인지, 아니면 수의사가 아닌 ‘양도 동물병원’에 갚아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나주인씨의 입장에서는 만일 김명의 수의사에게 진료비를 갚았다가 나중에 이양도 수의사가 다시 진료비를 청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박고용씨와의 문제에서는, 박고용씨가 월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지급할 사람이 이양도 수의사인지 김명의 수의사인지, 아니면 ‘양도 동물병원’인지가 역시 문제된다.

1. 김명의 수의사의 나주인씨와의 채권관계

가. 나주인씨의 진료 계약의 상대방

나주인씨는 이양도 수의사에게 진료를 맡겼고, 이는 나주인씨와 이양도 수의사 사이에 진료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주인씨가 지는 진료비 채무는 이양도 수의사에게 지는 것이며, 김명의 수의사와는 무관하다. 즉, 이양도 수의사만이 나주인씨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다. 나주인씨는 이양도 수의사에게 진료를 맡긴 것이 아니라 ‘양도 동물병원’에 진료를 맡긴 것으로 볼 수는 없을까?

나. ‘양도 동물병원’의 법적 지위

이양도 수의사는 ‘양도 동물병원’이라는 명칭으로 동물병원을 운영하였지만, ‘양도 동물병원’은 이양도 수의사의 개인사업이었다. 다시 말해서 ‘양도 동물병원’이 이양도 수의사와 별개의 법률적 주체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양도 수의사의 소유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양도 동물병원’이 법인과 같은 사회적 주체임을 전제로 나주인씨로부터 직접 진료비를 받을 수는 없다.

다. 영업양도 계약에 외상 진료비도 이전하기로 포함된 것은 아닌지

김명의 수의사와 이양도 수의사 사이의 영업양도 계약에 이양도 수의사가 나주인씨에게 갚는 진료비 채권도 양도하기로

포함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영업양도 자체만으로 이양도 수의사의 채권이 김명의 수의사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양도 계약은 '양도 동물병원'의 직원들과 물품들에 대한 것일 뿐이며, 이양도 수의사가 개인적으로 갖는 채권에 대한 계약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 채권양도 계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지만, 별도로 이양도 수의사와 채권양도 계약을 한다면 나주인씨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김명의 수의사와 이양도 수의사가 이양도 수의사의 나주인씨에 대한 진료비 채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계약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채권양도 계약은 일반적으로 영업양도 계약을 할 때에 포함되곤 한다. 영업양도 계약서에 『이양도 수의사가 '양도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갖게 된 진료비 채권을 김명의 수의사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양도 동물병원'의 인수액을 감액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다.

2. 김명의 수의사의 박고용씨와의 채무관계

가. 박고용씨의 근로 계약의 상대방

박고용씨는 이양도 수의사와 근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박고용씨는 이양도 수의사에게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양도 동물병원'은 이양도 수의사의 소유물이었을 뿐이므로, 박고용씨는 이양도 수의사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한다.

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이와 같이 박고용씨는 원칙상 이양도 수의사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하지만, 우리의 법률은 영업양수인이 사업장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예외를 인정한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물병원을 양수한 김명의 수의사가 동물병원의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양도 동물병원'으로 영업을 한다면, 박고용씨의 입장에서는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바뀐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므로, 김명의 수의사에게도 박고용씨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김명의 수의사가 박고용씨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양도 수의사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김명의 수의사가 책임을 피하는 방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명의 수의사는 박고용씨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사전에 이를 피하는 것도 가능하다.

첫 번째 방법은 '양도 동물병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으로, 상법 제42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김명의 수의사가 '양도 동물병원'을 양수한 후 곧바로 박고용씨에게 "양도 동물병원'이 인수되었으니 김명의 수의사는 밀린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통지하면, 박고용씨는 김명의 수의사에게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주의할 점은 그 통지를 김명의 수의사와 이양도 수의사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지급명령

김명의 수의사가 채권양도 계약을 한 경우, 나주인씨에게 갖는 200만원의 채권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힘들 것이다. 채권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3회 칼럼 참조) 

(수의사의 현실이 담긴 칼럼 사례를 모읍니다. 법률문제를 겪으셨거나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자의 이메일로 상담글을 보내주십시오. 문제에 답변도 드리고 익명의 칼럼 사례로서 신고자 합니다. 어떠한 주제라도 좋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